

김소희 노무사 「가벼운 객관식 사회보험법」  
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5-04-14)

**P.12** 17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 ( )

〈수정〉

**고용보험위원회**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 ( )

**P.13** 1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 )

〈수정〉

**고용보험위원회**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 )

**P.13** 19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. ( )

〈수정〉

**고용보험위원회**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. ( )

**P.13** 20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심의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. ( )

〈수정〉

**고용보험위원회** 심의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. ( )

**P.13** 2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 )

〈수정〉

**고용보험위원회**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 )

**P.13** 2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 )

<수정>

**고용보험위원회**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 )

**P.13** 23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 )

<수정>

**고용보험위원회**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 )

**P.14** 24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 )

<수정>

**고용보험위원회**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 )

**P.14** 25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. ( )

<수정>

**고용보험위원회**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. ( )

**P.18** 10번 문제 해설/정답 내용수정

<기존>

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**3년**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(고보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).

정답 ○

<수정>

**제1항에 따른**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**5년**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(고보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).

정답 ×

**P.21** 1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〈기존〉

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 )

〈수정〉

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 )

**P.26** 40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

〈기존〉

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.

〈수정〉

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.

**P.29** 03번 문제 삭제

**03**

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 )

피보험자는 아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아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(고보법 시행령 제96조).

정답

**P.45** 07번 문제 지문 ④ 내용수정

〈기존〉

-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

〈수정〉

-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

**P.50** 06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

〈기존〉

-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〈수정〉

-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**P.62** 01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

<기존>

-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수정>

-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P.74** 0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 ( )

<수정>

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 ( )

**P.74** 0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( )

<수정>

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( )

**P.75** 07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. ( )

<수정>

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중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. ( )

**P.75** 0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 )

<수정>

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 )

**P.77** 12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 
 <기존>  
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 )

<수정>  
**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**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 )

**P.78** 13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 
 <기존>  
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( )

<수정>  
**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**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( )

**P.78** 14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 
 <기존>  
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 )

<수정>  
**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**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 )

**P.84** 30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  
 <기존>  
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**손자녀 또는 형제자매**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. ( )

<수정>  
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**형제자매**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. ( )

**P.117** 15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  
 <기존>  
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**손자녀 또는 형제자매**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.

<수정>  
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**형제자매**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.

**P.131** 37번 문제 정답 내용수정

해설/정답 ⑤ → ③

**P.152** 47번 문제 지문/해설 내용수정

<기존>

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**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** ( )

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**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(징수법 제32조의5).**

<수정>

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**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**( )

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**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(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).**

**P.153** 48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

<기존>

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**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(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).**

<수정>

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**체납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(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).**

**P.164** 01번 문제 문제/정답 내용수정

<기존>

**01*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**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사유**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...

해설/정답 ⑤

<수정>

**01**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**다음달부터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**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...

해설/정답 ③

**P.177** 23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

<기존>

-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**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**

<수정>

-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**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**

**P.177** 23번 문제 해설 ②,③ 내용수정

<기존>

- ② 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(징수법 제32조의5).
- ③ 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(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).

<수정>

- ② **분할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(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).**
- ③ **건강보험공단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(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).**

**P.202** 03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

<기존>

-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<수정>

-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**P.212** 20번 문제 정답/해설 ③ 내용수정

<기존>

해설/정답 ⑤

- ③ 사기법 제20조 제4항

<수정>

해설/정답 ③

- ③ **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사기법 제21조 제1항).**

**P.228** 01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**여행**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. ( )

<수정>
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**체류**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. ( )

**P.229** 08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**업무에 종사하고**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( )

<수정>
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**체류하고**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( )

**P.232** 23번 문제 해설 내용수정

<기존>

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,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**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건강법 제87조 제2항).**

<수정>

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,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**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건강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).**

**P.233** 29번 문제 지문 내용수정

<기존>

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**보험료를 100분의 50을**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 ( )

<수정>

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**보험료율을**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 ( )

**P.235** 01번 문제 지문 ① 내용수정

<기존>

-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**여행**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.

<수정>

-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**체류**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.



**P.236** 03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

<기존>

-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**업무에 종사하고**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

<수정>

-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**체류하고**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

**P.239** 08번 문제 지문 ⑤ 내용수정

<기존>

- ⑤ 국외에 **여행** 중인 경우

<수정>

- ⑤ 국외에 **체류** 중인 경우

**P.240** 10번 문제 해설 ③,④ 내용수정

<기존>

- ③, ④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,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**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건강법 제87조 제2항).**

<수정>

- ③, ④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,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**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건강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).**

**P.241** 11번 문제 지문 ④ 내용수정

<기존>

-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**보험료율 100분의 50**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
<수정>

-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**보험료율을**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
**P.242** 14번 문제 지문 ② 내용수정

<기존>

- ② 국외에서 **업무에 종사**하고 있는 경우

<수정>

- ② 국외에서 **체류**하고 있는 경우

**P.243** 16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

<기존>

-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**산정하되,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.**

<수정>

-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**산정한다.**

**P.251** 30번 문제 정답/해설 내용수정

<기존>

**해설/정답 ⑤**

**건강법 시행규칙 제51조**

1.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
2.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3.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·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
4.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수정>

**해설/정답 ④**

**건강법 제9조(자격의 변동 시기 등)**

1.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, 근로자·공무원 또는 교직원(이하 “근로자등”이라 한다)으로 사용된 날
2.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
3.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
4.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
5.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

**P.264** 04번 문제 지문 ③ 내용수정

<기존>

- ③ 사망한 때,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,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, **직장가입자**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.

<수정>

- ③ 사망한 때,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,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, **지역가입자**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.